

# 제주도 무형문화유산 전승보전 및 진흥 방안

좌혜경 · 고영자



# 발 간 사

제주민의 정신적 가치가 담긴 무형문화유산은 제주인의 삶의 일부이며 공동체 문화 복원과 제주의 정체성 구현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 중 전승 보전 가치가 있는 종목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지정무형문화재 5건, 도지정 지방문화재 19건, 총 24건을 지정하여 전승 보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유산이란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고정되지 않고 일정한 정체성을 지니면서도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면서 창조력을 지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무형문화재들은 현 생활에서 향유되고 있지 않기에 전승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됨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진흥을 위한 지속가능한 전승 보전 기반 강화 및 보호정책의 호응노력에 발맞추어,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제주형 무형문화유산의 보전·진흥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그래서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지속적인 전승을 위한 제도 보완과 무형문화유산으로의 확대 재편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보전·진흥을 위한 정책들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교류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적극적 노력과 병행해서 제주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적인 방안 모색과 가치 재창출의 노력이야말로 오늘날 무엇보다도 이뤄져야 할 시대적 요청이자 당면과제라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양 영 오



## 연구요약

### 1. 서론

#### 가. 연구의 필요성

- 무형문화유산은 고정되지 않고 실현되는 가변적 실체이면서 일정한 정체성을 지니면서도 사회 내부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면서 다양화 되는 상황임
- 현재 국가나 지방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되고 있는 무형문화재들은 실제 상황에서 향유되고 있지 않아 전승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됨
- ‘지속가능성’ 과 전승 보전 기반 강화를 위한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제주형 보전정책을 수립하고 실천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 됨

#### 나. 연구의 목적

- 무형문화유산의 지역성을 살린 전승 보전을 위해 국가의 문화유산 보호정책에 발맞춰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보전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효율적 정책 모델 개발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의 국가지정 5건의 중요무형문화재와 도지정 19건 등, 도 소재 지정문화재 현 실태 조사로 전승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함

#### 다. 주요 연구 내용

- 연구의 방법
  - 문화재 관련 법률, 조례 규칙 등 조사 분석

-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로 지정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실태 및 전승보전 현황 분석으로 도 소재 무형문화재 전승의 한계와 문제점 발견에 따른 대안 제시
- 무형문화재 전승·보존 및 무형문화유산 진흥·보전안 마련

○ 연구 범위

- 도지정 문화재 및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 도지정,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전수자
- 기타 비지정 무형문화재

## 2. 현장·설문조사 결과

- 현행 문화재법의 무형문화재 보전과 전승제도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족하고 있고 문화재 전승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지정과 제도 개선으로는 무형문화유산으로의 범위 확대 및 재분류를 위한 유사 종목간의 통합과 전승보전 체계가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역 공동체의 전승을 위한 민속연희나 축제, 의식, 한글, 지역 방언 등의 종목을 추가하고, 지역성을 살린 전승보전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무형문화재 지적재산권 확보로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고 보유단체 지정으로 확고한 전승기반 마련
- 전승지원금의 현실화, 전수교육관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 유치 및 설립

### 3.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한 제도 보완

- 보유자 총원 및 보유단체 지원
  - 보유자 사망으로 종목 보유자 지정 및 총원
  - 보유자 고령인 종목 도지정 명예 보유자 선정
  - 보유단체의 법인화와 전승비 지원으로 전승보전 기반마련
- 전승범위 확대
  - 유사종목 통합으로 계열별로 범위를 확대하여 무형유산으로 재편
- 무형문화재 지식재산권 보호
  - 무형문화재의 지식재산권 인정
  - 개인과 단체의 기·예능에 대한 법적 보호

### 4. 무형문화유산의 보전·진흥 방안

- ‘해녀문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 해녀문화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세계유산적 가치를 인정
  - 국가등록무형문화유산 국내법 지정과 해녀양성 등 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보전책 마련
- 성읍민속마을의 무형문화유산 보전
  - 민속적 전통을 복원하고 효율적 보전관리 활용에 대한 장기 계획 마련과 동시에 전통문화체험의 거점화로 삼고 문화관광자원화
- ‘제주무속의례 본풀이’ 전승보전
  - 큰굿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와 ‘본풀이’의 구전유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전승보전 기반 마련
- 마을 민속연희 문화유산 지정 방안
  - 연희판, 소리판 재구성으로 마을의 정체성과 공동체 문화 회복

- 전수관 기능 활성화와 ‘민속예능교육원’ 개원
  -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공연을 통한 전수관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함
  - 전수교육을 대학교육에 편성하여 진행하는 무형문화유산 평생 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 5.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유산 전승보전과 진흥」 조례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비지정 무형문화유산의 보전·진흥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보유단체의 보유자 지정 및 전승비 지원, 유사 종목 통합과 종목 대상 확대 관련 항 법적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는 무형문화유산의 보고(寶庫)로 제주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주지역의 전통문화 전승 활성화 및 세계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함

## 6.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유산 보전 진흥을 위한 5개년」 계획 마련

- 무형문화유산 전통의 적극적 계승으로 보전 진흥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고, 제주만의 독창성과 역사성 공동체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 사업 마련
- 비지정문화유산 조사로 보전·진흥 기반 조성
- 무형문화유산 전승보전을 위한 종합 계획으로 중점 추진 과제를 총망라하고 기본 방향을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유산 전승보전과 진흥조례」 제정에 따른 실천계획으로서의 효력이 있음



○ 중점 추진과제

- 종목통합 및 종목 대상 확대, 체제 개편
- 종목통합으로 복수보유자 체계 인정
- 제도권 교육 활용한 ‘민속예능교육원’ 개설 프로그램 운영
- 개별 종목 전승보전을 위한 시행지침 마련
- 무형문화유산 지식재산권 인정
-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 및 가치 재창출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1
3. 주요 연구 내용 .....	2
4. 선행연구 및 법안 분석 .....	2
II. 무형문화재 전승현황 조사 .....	7
1. 현장실태 파악 기초조사 .....	7
2.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실태 .....	7
3. 무형문화재 실태조사와 문제 인식 .....	9
III. 설문조사 결과 .....	28
1. 조사 개요 .....	28
2. 조사 대상 .....	28
3. 조사 기간 .....	28
4. 조사 방법과 내용 .....	29
5. 조사 내용과 분석 결과 .....	29
6. 시사점 .....	39
IV.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한 제도 보완 .....	41
1. 보유자 충원 및 보유 단체 지원 .....	41
2. 전승범위 확대 .....	42
3. 무형문화재 지식재산권 보호 .....	43
V. 무형문화유산 보전·진흥 방안 .....	44

1. ‘제주해녀’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 등재 .....	44
2. 성읍 민속마을의 무형문화유산 보전 .....	47
3. ‘제주무속의례 본풀이’ 전승 기반 마련 .....	50
4. 마을 민속연희 문화유산 지정 방안 .....	52
5. ‘민속예능교육원’ 개설과 전수관 활성화 .....	54
6.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유산 전승보전과 진흥」 조례 제정 .....	55
7.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유산 보전 진흥을 위한 5개년」 계획 마련 .....	55
참고 문헌 .....	57
Abstract .....	58

## 표 목차

〈표 I-1〉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현황 .....	5
〈표 I-2〉 무형문화유산 보호범위 .....	6
〈표 II-1〉 무형문화재 총괄표 .....	7
〈표 II-2〉 종목별 기·예능 전수자 현황 .....	8
〈표 III-1〉 현행 문화재 보전·전승제도에 대한 만족도 .....	29
〈표 III-2〉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제도 .....	30
〈표 III-3〉 무형문화유산법 지정의 적절성 .....	31
〈표 III-4〉 무형문화유산법 개정의 중요도 .....	32
〈표 III-5〉 무형문화유산 추가 종목 .....	33
〈표 III-6〉 전승 활동 시간 .....	34
〈표 III-7〉 전수조교의 적정 인원 .....	34
〈표 III-8〉 월 전승지원금의 바람직한 사용에 대한 의견 .....	35
〈표 III-9〉 제도 개선의 우선 순위 .....	36
〈표 III-10〉 무형문화재의 소관기관에 대한 의견 .....	37
〈표 III-11〉 무형문화재 예·기능의 지식재산권 .....	38
〈표 III-12〉 설문조사 내용과 분석 결과 .....	39

## 그림 목차

〈그림 IV-1〉 보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식재산권 행사 .....	43
〈그림 V-1〉 마을 민속연희 문화유산 지정 방안 .....	53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 제주민의 정신적 가치가 담긴 무형문화유산은 제주인의 삶의 일부이며 공동체 문화 복원과 제주의 정체성 구현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함
- 무형문화는 고정되지 않고 실현되는 가변적 실체이면서 일정한 정체성을 지니면서도 사회적 유대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고 다양화 됨
- 현재 지정되고 있는 무형문화재가 실제 상황에서 전승되고 있지 않아 보전을 위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글로벌화로 자국의 책임이 아닌 전 지구적인 보전 패러다임 전환기를 가져왔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무형유산 자료 목록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지속가능’의 전승 보전 기반 강화를 위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 됨

## 2. 연구의 목적

- 지역성을 살린 전승 보전을 위해 국가의 문화유산 보호정책에 발맞춰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제주형 무형문화유산 보전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효율적 정책 모델 개발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의 국가지정 5건의 중요무형문화재와 도지정 19건 등, 도 소재 지정문화재 현 실태 조사로 전승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을 마련함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2003), 중국의 비물질무형유산법, WPO(세계지적소유권 기구)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약 등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 방안임

### 3. 주요 연구 내용

#### ○ 연구의 방법

- 문화재 관련 법률, 조례 규칙 등 조사 분석
-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로 지정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실태 및 전승보전 현황 분석
- 도 소재 무형문화재 전승의 한계와 문제점 도출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전승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 보전 정책 재편 및 지침을 마련하고 진흥 방안 마련

#### ○ 연구 범위

- 도지정 문화재 및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 도지정,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전수자
- 기타 비지정 무형문화재

### 4. 선행연구 및 법안 분석

#### 가.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sup>1)</sup>

- 문화재보호법상의 무형문화재 제도는 일제강점기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시대변천에 따라 소멸되던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전에 일정 부분 기여함
- 현행 문화재보호법상의 원형보전 원칙은 유형문화재에 적합한 원칙으로 되어 있고, 무형문화재의 박제화와 함께 ‘원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의 향유에 대한 제약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됨
- 마을 단위로 전승되는 문화유산 본래의 맥이 무시된 채, 기·예능이 뛰어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여 선발 결과는 탈맥락화, 현장과 연계되지 못한 법 규정으로 문화유산 전승이 단절되거나 소멸위기에 처함

1) 문화재청, 「(가칭)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연구」, 인하대학교, 2011. 12..



-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유네스코 기준에 맞춰서 개념을 확대하고 국가무형유산목록으로 지정하여 차후 유네스코무형유산 보호협약에 등재할 수 있는 목록 정리
- 문화재청은 ‘지속가능’의 전승 보전 기반 강화를 위한 “무형문화 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 현행법에서 무형문화재 규정을 분리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 원칙을 재정립하여 전승함

## 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 자신의 문화도 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공간을 말함
- 세대간 전승되는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 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었으며, 이들에게 정체성 및 지속성을 제공하여 문화 중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킨다.” 라고 정의함
-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은 무형문화유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1)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표현 2) 공연 예술 3) 자연과 우주에 관한 사회적 관습 4)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5) 전통기술(제2조 제2항)로 정의함
-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글로벌화는 자국의 책임이 아닌 전 지구적인 보전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세계 각국은 이에 대응하여 무형유산 자료의 전반적인 조사를 통한 유네스코, 긴급목록, 국가, 도 무형유산 목록으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보전(safeguarding)이란 “특히 공식적·비공식적 교육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확인, 문서화, 연구, 보전, 보호, 증진, 전수 등의 구현을 위한 조치를 의미” (제2조 제3항)하고 세계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이행을 위한 무형문화유산 독립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됨

## 다. 중국의 사례 - 비물질 문화유산법과 전통공예미술보호 조례

- 중국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법이 지정되자 ‘중국민간문화유산복구프로젝트’를 국가차원에서 가동
- 2004년에는 유엔(UN)의 ‘비물질 문화유산보호공약’에 가입하고, 2005년 ‘우리나라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강화에 관한 의견’을 통해 물질문화유산과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구분
- 2005년 6월, 비물질 문화유산 자료관리 중심으로 비물질 문화유산 네트워크를 관리 운영하고, ‘중국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중심’을 위한 기구를 중국 예술원 산하에 건립
- 2006년 12월, 국가급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잠정조치 제정, 비물질 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된 문화유산의 효과적 보호와 관리
- 2009년 3월, ‘비물질 문화유산사’ 설치
- 2010, ‘비물질 문화유산법’ 제출
- 2011, ‘비물질 문화유산법’ 제정
- ‘비물질 문화유산법’의 무형문화유산의 범위
  - 1) 전통구전문학과 그것을 전달하는 언어
  - 2) 전통미술, 서예, 음악, 무용, 희극, 곡예, 잡기
  - 3) 전통기예, 의약, 역법
  - 4) 전통예절, 의식, 명절(기념일) 등 민속
  - 5) 전통 체육과 유희
  - 6) 기타
- 중국은 전통공예 미술을 보호하고 전통공예 미술 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전통공예미술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1) 전통공예미술의 보호 주체로서 국가와 지방 각급의 인민정부 2) 국가 인정제도 마련 3) 일반적 보호조치 4) 원료 및 재료에 대한 관리 5) 지원 사항 등임

## 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및 시행규칙<sup>2)</sup>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 역사상·학술상·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을 지정 보호
    - 연극
      - 인형극·가면극
      - 음악
    - 제례악·연례악·대취타·가곡·가사 또는 시조의 영창·산조·농악·잡가·민요·무악·범패
      - 무용
    - 의식무·정재무·탈춤·민속무
      - 공예기술
    - 도자공예·피모공예·금속공예·골각공예·나전칠공예·제지공예·목공예·건축공예·지물공예·직물공예·염색공예·옥석공예·수·매듭공예·복식공예·악기공예·초고공예·죽공예·무구공예
      - 그 밖의 의식·놀이·무예·음식제조 등
      -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

<표 I -1> 제주도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현황

	계	민요	공예기술	의식	음식	놀이
국가 지정	5	1	3	1		
도 지정	19	7	5	4	2	1

2) 조례는 헌법 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로 제정하는 자치법규임. 조례는 법령의 위임여부에 따라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로 구분되고, 조례제정의 재량여부에 따라 필수조례와 임의조례로 구분,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호 조례는 위임조례이며 필수조례임, 조례 시행규칙은 헌법 제11조 제1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6 (규칙)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자치법규임.

<표 I -2> 무형문화유산 보호범위

구분	제주도무형문화재	세계무형문화유산	중국의 무형문화 유산	한국 무형문화재
근거	「제주도무형문화재 보호조례규칙」	「유네스코무형문화 유산보호협약」	「중국비물질문화 유산법」	「한국문화재보호법」
보호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상·학술상·예술상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 한국문화재법 범위와 동일	1)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전통 표현 2)공연예술 3)자연과 우주에 관한 사회적 관습 4)자연과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5)전통기술	1)전통구전문학과 그것을 전달하는 언어 2)전통미술 서예, 음악, 무용, 희극, 곡예, 잡기, 3)전통기예, 의약, 역법 4)전통예절, 의식, 명절 등 민속 5)전통 체육과 유희 6)기타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II. 무형문화재 전승현황 조사

### 1. 현장실태 파악 기초조사

○ 조사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국가 및 도지정무형문화재 24건
- 현 지정무형문화재 전수자 및 전문가 등 80명

○ 조사기간 : 2012. 10. 1 ~ 2012. 10. 31(1개월 간)

○ 조사방법 : 설문 및 면접 조사

○ 조사내용 : ‘원형 보전의 원칙’ 수정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보전방향 설정을 위한 전승교육 실태파악 및 현 전승교육 진행상황 점검

○ 실태 조사의 기본방향

-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지정 실태
- 종목별 기·예능 전수자 현황
-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보전 실태와 문제점 파악
-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보전 실태와 문제점 파악

### 2.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실태

<표 II -1> 무형문화재 총괄표

구분	계	보유 단체	명예 보유자	보유자	교육조교	이수생	전수 장학생	일반 전수자
계	98	4	3	25	14	18	22	12
국가지정	40	0	3	6	2	11	8	10
도 지 정	58	4	0	19	12	7	14	2

<표Ⅱ-2> 종목별 기·예능 전수자 현황

국가, 도지정 무형문화재 기·예능 전수자 수(2012)								
구분	종목	보유 단체	명예 보유자	보유자	조교	이수자	전수 장학생	일반 전수자
국 가 지 정	제4호 갓일 (양태포함)		1	2		1	3	
	제66호 망건장		1	1		1		
	제67호 탕건장		1	1		2		
	제71호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1	2	7	5	10
	제95호 제주민요			1				
도 지 정	제1호 해녀노래			2			3	
	제2호 영감놀이				1			2
	제3호 성읍민속마을 오메기술			1	1			
	제5호 송당리마을제	1						
	제6호 남읍리마을제	1						
	제7호 덕수리불미공예			1	1		2	
	제8호 정동별립장			1	2			
	제9호 방앗돌굴리는 노래			1	1		2	
	제10호 멀치후리는 노래					1	2	
	제11호 성읍민속마을 고소리술			1	1			
	제12호 고분양태			1	1		1	
	제13호 제주큰굿					1	7	
	제14호 제주도 용기장			4				
	제15호 제주불교의식			1			2	
	제16호 제주농요					1	1	
	제17호 진사대소리			1	1		1	
	제18호 귀리 길보리 농사일소리	1		1				
	제19호 성읍리 초가장	1		3				
	제20호 제주시 창민요			1				

[참고] 도 지정 제4호는 본래 ‘오돌또기’ 였으나, 국가지정 제95호에 포함되면서 빠지게 됨

### 3. 무형문화재 실태조사와 문제 인식

#### 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전 실태

##### (1) 지정일 및 보유자 현황

종목	지정일	보유자
제4호 갓일	1985. 02. 01	김인(명예보유자) 강순자(총모자보유자) 장순자(양태보유자)
제66호 망건장	1987. 01. 05	이수여(명예보유자) 강전향(망건장보유자)
제67호 탕건장	1980. 11. 17	김공춘(명예보유자)) 김혜정(탕건장보유자)
제71호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1980. 11. 17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지정 (2009. 09. 30)	김윤수(보유자)
제95호 제주민요	1989. 12. 04	강문희(전수조교)

##### (2) 개요

종목	개요
제4호 갓일	갓은 말총으로 만드는 총모자와 대로 만든 양태로 구성됨 갓과 망건, 탕건을 뜨는 관모공예가 성행했던 곳은 조천, 애월, 제주시 등지로 산지포, 조천포, 화북포 등의 포구가 있는 곳임 갓을 구성하는 옆 부분의 챙을 ‘양태’ 라고 하는데 하동, 진주, 담양, 통영 등지에서 사들인 대나무를 이용하여 만듦
제66호 망건장	과거 남성들은 한복의 정장을 입을 때는 우선 이마에 망건을 두르고 탕건을 써서 머리를 정리함 망건은 머리털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마로부터 머리 위쪽으로 돌러치는 넓이가 7센티 정도 되는 말총으로 만든 띠임
제67호 탕건장	탕건은 상투와 머리카락을 감싸고 갓을 받치는 구실을 하는데, 화북, 조천지역에서 말총을 이용하여 제작함

종목	개요
제71호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p>영등굿은 해마다 음력 2월 초하루와 보름 사이에 제주도 해안가 마을의 본향당에서 바람의 신인 영등신을 맞이하여 풍어 및 해상안전과 해녀들의 채취물인 소라·전복·미역 등의 풍어를 기원하는 굿임</p> <p>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당굿을 겸하고 있으며 선박을 가진 선주들과 어부, 해녀들이 단골임</p> <p>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① 초감제 → ② 시왕맞이 → ③ 씨드림·씨점 → ④ 배방선에서 ①과 ②사이에 &lt;본향뚝&gt;, ③과 ④사이에 &lt;영감놀이&gt;가 삽입되어 제주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있는 &lt;영등굿&gt;을 완성 함</p> <p>여러 마을에서 행해지는 영등굿 가운데 제주시 건입동에서 행해지는 영등굿을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라 하여 1980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되었고, 1986년 11월 17일 단체 인정 2009년 9월 30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이후, 현재 김윤수를 기능보유자로하여 제주칠머리당굿보전회에서 맡아 국내외로 활발하게 전승</p>
제95호 제주민요	<p>조선조 500년 동안 정의현의 현청 소재지였으므로 관기들에 의해 전해지던 노래가 민간에 전해지면서 전파되고 있음</p> <p>&lt;오돌또기&gt;, &lt;산천초목&gt;, &lt;봉지가&gt;, 그 외 &lt;맷돌노래&gt;가 포함되어 있음</p> <p>성읍창민요의 전승 상황과 그 계보는 강필용-변여옥-조을선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주로 지역 주민들에 의해 널리 불림</p>

### (3) 전승자현황

#### ○ 갓일

구분	성명	직업	건강상태	전수능력
보유자(양태)	장순자	전수자	양호	양호
명예보유자(총모자)	김인	고령	양호	양호
보유자(총모자)	강순자	전수자	양호	양호
전수장학생	양윤희	전수자	양호	양호
전수장학생	강병희	전수자	양호	양호
이수자	양선미	가정주부	양호	양호
전수장학생	양정미	회사원	양호	양호



○ 망건장

구 분	성명	직업	건강상태	전수능력
명예보유자	이수여	전수자	양호	양호
보유자	강전향	보유자	양호	양호
이수자	전영인	회사원	양호	양호

○ 탕건장

구 분	성명	직업	건강상태	전수능력
명예보유자	김공춘	보유자	양호	양호
보유자	김혜정	보유자	양호	양호
이수자	김선이	전수자	양호	양호
이수자	김경희	전수자	양호	양호

○ 제71호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구 분	성명	직업	건강상태	전수능력
보유자	김윤수	무속인	양호	양호
전수조교	고순안	무속인	양호	양호
전수조교	이용순	무속인	양호	양호
이수자	마치순	무속인	양호	양호
이수자	이용옥	무속인	양호	양호
이수자	신복만	무속인	양호	양호
이수자	김연희	무속인	양호	양호
이수자	강연순	무속인	양호	양호
이수자	신순덕	무속인	양호	양호
이수자	고덕유	무속인	양호	양호
전수장학생	김영철	무속인	양호	양호
전수장학생	강성열	무속인	양호	양호
전수장학생	김광빈	무속인	양호	양호
전수장학생	이태훈	무속인	양호	양호
전수장학생	윤미란	무속인	양호	양호
전수자	한진오, 양승건, 김현철, 양혁준, 강상우, 부진희, 강창훈, 강희경, 김현주, 한송이			

○ 제95호 제주민요

구 분	성명	직업	건강상태	전수능력
보유자	강문희	예능인	양호	양호

(4) 전수교육

종목	전수교육
제4호 갯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무형문화재 전수관 및 갯전시관 교육활동 (매주 화요일 14:00~16:00, 5~12월)</li> </ul>
제66호 망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무형문화재 전수관 교육활동 (매주 화요일 14:00~16:00, 5~12월)</li> </ul>
제67호 탕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무형문화재 전수관 교육활동 (매주 화요일 14:00~16:00, 5~12월)</li> </ul>
제71호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전회는 학교현장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본향당신의 본풀이와 바람신인 영등할망을 테마로 예술체험 활동 프로그램(연물장단, 소리, 춤, 해신당 기행) 운영</li> <li>• 2012 생생 문화재사업(2012년 5월~11월) 프로그램 운영</li> </ul>
제95호 제주민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현재, 정의고을 소리패 책임지도</li> <li>• 2011~현재, 성읍초등학교 월 1회 국악조회</li> <li>• 2000~현재, 개인지도 및 공연지도</li> </ul>

(5) 전승공연 및 시연

종목	전승공연 및 시연
제4호 갯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 손끝으로 이어지는 우리 「갯」 (04. 07-04. 16)</li> <li>• 연 1회 보유자 전시 및 교육(문화재청)</li> </ul>
제66호 망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6호 망건장 보유자 강전향 시연과 전시(04.14-04.20)</li> <li>• 연 1회 보유자 전시 및 교육(문화재청)</li> </ul>
제67호 탕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무형문화재 보급선양 사업 참여(문화재보호재단)</li> <li>• 탐라문화재 재현 행사 참여</li> </ul>
제71호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굿보러가자” (2010년 9월, 제주아트센터)</li> <li>• 국립국악원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시연(2010년 9월, 국립국악원 우면당)</li> <li>• 산지천축제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시연(2011년 7월, 산지천 특설무대)</li> </ul>

종목	전승공연 및 시연
제71호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해녀축제 “요왕맞이” 시연(2011년 10월, 해녀박물관)</li> <li>•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집행(매년 3월)</li> <li>• 탐라문화제 무형문화재 축제(매년 10월)</li> <li>•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1주년 기념공연(2010년 12월, 제주영상센터)</li> <li>• 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제” 집전(2011년 5월)</li> <li>• 임진년 맞이 도민화합 기원제(2012년 1월, 제주영상센터)</li> </ul>
제95호제주민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 9월 문화재청 주최 Good 보러가자 초청 공연</li> <li>• 2000~현재 매년 정의고을축제 시연</li> <li>• 2011. 탐라개벽 신화 재현축제 참가</li> <li>• 2012. 8월 농림수산부 국제워크숍 제주민요 시연</li> <li>• 2012. 10월 세계평화의 섬 평화교류 한마당 제주민요 시연</li> <li>• 그 외 국내 대회 및 축제, 관광이벤트 관련 대소 공연 250여회</li> </ul>

**(6) 전승보전 관련 문제 제기**

- 보유자 및 전수자 확보
- 전승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전수관의 유무에 따른 정상적인 운영
- 대중화, 세계화를 위한 전승기반 확보 및 활성화
- 적극적인 전수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

종목	전수교육에 대한 문제점
제4호 갯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적인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수생 확보가 미비함</li> <li>• ‘갯전수관’ 홍보 및 전수관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li> <li>• 망건장, 탕건장과 공동으로 ‘관모공예’ 전수관의 역할 제고,</li> <li>•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공교육과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li> <li>• 국제적인 대내외 홍보가 ‘갯전수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li> </ul>
제66호 망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수생 확보 및 전승보전을 위한 정책 마련 및 활성화 필요</li> </ul>
제67호 탕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수생 확보 및 전승보전 활성화 필요</li> </ul>
제71호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적 가치 발현을 위한 활동 지원 절실</li> <li>• 무형문화유산의 대중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수체계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성되고 있음</li> <li>• 제주무속의례 관련 조사, 연구 및 &lt;제장(당)-사제(심방)-단골(신앙민)&gt;을 기반 한 도 전역 전승과 전수 체계가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li> </ul>

종목	전수교육에 대한 문제점
제95호 제주민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창자 요종 및 전승범위 확대로 보전체계 마련</li> <li>•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계기 마련</li> <li>• 진흥정책 일환으로 살아있는 민요현장 복구 등이 필요</li> <li>• 전수생 확보 및 제도권에 의한 교육 필요</li> </ul>

## 나.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전 실태

### (1) 지정일 및 보유자 현황

종목	지정일	보유자
제1호 해녀노래	1971.08. 26	강등자(보유자) 김영자(보유자)
제2호 영감놀이	1971.08. 26	오춘옥(전수조교)
제3호 성읍민속마을 오메기술	1990.05. 30	김을정(보유자)
제5호 송당리마을제	1986.04. 10	송당리마을제보전회
제6호 남읍리마을제	1986.04. 10	애월읍 남읍리 민속보전회
제7호 덕수리불미공예	1986.04. 10	윤문수(보유자)
제8호 정동벌립장	1986.04. 10	홍달표(보유자)
제9호 방앗돌굴리는 노래	1986.04. 10	김영남(보유자)
제10호 멀치후리는 노래	1986.04. 10	한성복(전수조교)
제11호 고소리술	1995.04. 20	김을정(보유자)
제12호 고분양태	1998.04. 08	송옥수(보유자)
제13호 제주큰굿	2001.08. 16	서순실(전수조교)
제14호 제주도 옹기장	2001.08. 16	신창현 · 이윤옥 · 강신원 · 고원수(보유자)
제15호 제주불교의식	2002.05. 08	문명구(보유자)
제16호 제주농요	2002.05. 08	김향옥(전수조교)
제17호 진사대소리	2005.10. 05	진선희(보유자)
제18호 귀리 곁보리 농사일소리	2007.02. 28	하귀2리 민속보전회
제19호 성읍리 초가장	2008.04. 18	현남인 · 강창석 · 강임용(보유자)
제20호 제주시 창민요	2009.07. 29	김주산(보유자)

(2) 개요

종목	개요
제1호 해녀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해녀들이 동력선인 배를 타고 물질 작업 나갈 때 노를 저으면서 불렀던 '해녀 노젓는 소리'를 말함</li> <li>• 해녀들의 노래는 노동현장과 삶, 제주여성, 제주인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원시어업노동요로서 미학적 가치가 뛰어난 문학적 양식</li> <li>• 해양문명사적 관점에서 해녀노래는 노동 기능요로 노동기원과 음악, 문학적 특성을 살필 수 있음</li> </ul>
제2호 영감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감놀이는 제주도 무당굿에서 도깨비(도채비)신을 대상으로 한 연희적 의례임</li> <li>• 영감놀이는 놀이굿 형태를 취하여 심방(무당)들이 연극적인 대화와 행위로 전개되는 의례임과 동시에 연희로 도깨비신인 영감의 내력담 연희화</li> </ul>
제3호 성읍민속마을 오메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메기술은 차조를 가루로 빵아 끓는 물로 반죽하여 오메기떡을 만든 후 가마솥에서 찌고 건져내어 주걱으로 떡을 충분히 으갠 다음, 오메기떡 찢 물을 넣은 후, 떡 양의 1/3 정도 누룩을 넣어 잘 배합하고 옹기 항아리에서 7일 정도 숙성시켜 완성함</li> </ul>
제5호 송당리마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올리는 본향당굿으로 송당리 본향당에 모셔진 당신은 강남천자국에서 왔다는 '백주또' 여신임</li> <li>• 당오름에 모신 여신 백주또마누라를 신앙 대상으로 삼는 송당리 무속제의는 음력 2월 13일의 영등굿, 음력 7월 13일의 마불림제, 음력 10월 13일의 시만곡대제로, 일년에 네 번 정기적인 제의가 치러졌으나 음력 정월 13일의 신과세제(新過歲祭)가 중심임</li> </ul>
제6호 납읍리마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성들에 의해 치러지는 유교식 마을제로 포제(醕祭)라고도 하며, 애월읍 납읍리 금산공원 내에 있는 포제단에서 매해 음력 정월초 정해(丁亥)일에 제를 지냄</li> <li>• 모시는 신은 토신지위(土神之位), 포신지위(醕神之位), 서신지위(西神之位)이며 홀기(笏記)에 따라 예(禮)를 올림</li> <li>• 보유단체는 납읍리 마을제 보전회로 마을 남성들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음</li> </ul>
제7호 덕수리불미공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덕수리의 풀무공예 형태는 땅바닥에 장방형의 골을 파서 중간에 굴대를 가로 박고, 그 위에다 골에 맞는 널빤지를 걸쳐놓아 한 쪽에 세 사람씩 서서 널빤지의 두 끝을 널뛰기하듯 디디며 바람을 일으켜 쇠를 녹임</li> <li>• 주로 솔, 보습, 벗 등을 만드는데 미리 만들어 놓은 틀에다 무쇠를 녹인 쇠물을 부어넣음</li> </ul>

종목	개요
제8호 정동별립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동별립 (정당별립)은 농부들이 쓰는 모자의 일종으로 정동줄 (댕댕이덩굴)를 이용하여 만듦</li> </ul>
제9호 방앗돌굴리는 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말방앗간 연자매의 옷돌과 알돌을 산이나 바다가, 들판, 냇가 등지에서 제작한 다음 주민들이 마을로 끌어들이면서 부르는 운반노동요</li> <li>연자매는 ‘물방이’, ‘물방에’, ‘물그레’ 라고도 하며 현무암의 검은 돌인 옷돌과 알돌을 만든 후 끌어들면서 부름</li> </ul>
제10호 멀치후리는 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멀치후리는 노래는 멀치그물을 후리면서 부르는 어업 노동요로 ‘멜후림 소리’ 혹은 ‘멜후리는 소리’ 라고도 함</li> <li>처음에 멀치 후리는 노래를 부르고 이어서 풍어를 기뻐하는 느린 ‘서우젯소리’ 를 노래함</li> </ul>
제11호 고소리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주(燒酒)를 내리는 소줏고리를 제주어로 ‘고소리’ 라고 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40-45도로 고아 낸 전통 토속주임</li> <li>차조로 고두밥을 짓고 누룩가루를 섞어서 밀술을 만든 후 23-25도의 저장고에서 7일 정도 숙성시킨 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덧술을 넣는데, 7일 후면 청주가 되는데 이를 가마솥에 넣어 열을 가함</li> <li>가마솥 위에 얹힌 고소리 내부에서 기체가 되어 올라간 소주는 찬물 용기에 닿아 식혀진 후 주둥이 부분으로 증류식 소주를 내림</li> </ul>
제12호 고분양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갓은 모자 부분과 양태 부분으로 구성되며, 갓 밑 둘레 바깥 부분을 ‘갓양태’ 혹은 ‘양태’ 라고 함</li> <li>고분양태라는 것은 대오리를 아주 가늘게 해서 섬세하게 짠 것을 말함</li> </ul>
제13호 제주큰굿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 큰굿을 ‘두이레 열나홀 굿’ 이라고 하는데 기간이나 규모면에서 가장 큰 종합연희로, 무당집에서 하는 ‘신굿’ 과 일반적인 가정에서 행하는 ‘큰굿’ 의 유형임</li> <li>제주도 사람들의 인생관, 우주관, 자연관을 비롯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춤, 노래와 무가가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음</li> </ul>
제14호 제주도 용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도의 전통용기는 철분이 많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해서 구우면 그릇 표면이 짙고 아름다운 붉은 색이나 노란 빛이 감도는 갈색을 띠</li> <li>재가 유약을 바르지 않은 그릇에 내려 앉아 그릇의 표면과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자연유의 광택이 특징임</li> <li>2001. 7. 11 제주용기를 대표할만한 허벅을 중심으로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허벅장’ 이 지정되었으나, 기능별로 전승종목의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2011. 9. 27일</li> </ul>

종목	개요
제14호 제주도 옹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도 옹기장’ 으로 문화재 명칭을 변경함</li> <li>명칭을 제주도옹기장으로 정하고, 도요(가마, 굴이라고 함)의 보수 관리 기능을 가진 ‘굴대장’, 흙을 선별하고 고르는 기능을 가진 ‘질대장’, 옹기 성형기능을 가진 ‘도공장’, 건조된 성형옹기를 굽는 기능을 가진 ‘불대장’ 보유자들을 지정 보전함</li> </ul>
제15호 제주불교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의 불교의식은 부처님께 드리는 음성공양과 재(齋)공양의 측면에서 육지부와는 다르고, 음성공양인 범음(梵音) 곧 범패(梵唄)는 불교의식 중에서 재를 올리기 위해 부처님께 바치는 의식요(儀式謠)임</li> <li>불교적인 용어로 재(齋)라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 천도를 위해서 또는 복을 받기 위하여나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무운(武運)을 기원하는 불교적 예배의식을 말함</li> </ul>
제16호 제주농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 노동요 중에서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된 ‘밭블리는 소리’ 와 ‘사대소리’, ‘타작소리’ 는 제주농요의 대표격임</li> <li>노동 기능이 남아있고 전승력이 강하여 가장 많은 창자층을 확보한 노래로 볼 수 있음</li> </ul>
제17호 진사대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매는 소리 중 음을 늘려서 느린 가락으로 부르는 여유있고 유장한 소리를 말함</li> <li>선율은 세련되고 우아한 선법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음악 미학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님</li> <li>애월 지역의 ‘진사대소리’ 는 주로 더운 여름날 콩밭이나 조밭을 맬 때 부르는 소리임</li> </ul>
제18호 귀리 걸보리 농사일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걸보리 농사는 인분을 먹던 돼지의 우리(돛통시)에서 썩힌 돛거름에 씨앗을 섞어서 그 거름의 영양분으로 자란 보리가 자라도록 하는 생태학적 순환적 농법을 반영한 민요</li> <li>구성은 ‘마소집실고 가는 소리’, ‘마소모는 소리’, ‘돛거름밟는 소리’, ‘밭가는 소리’, ‘김매는 소리’, ‘타작소리’ 로 구성됨</li> </ul>
제19호 성읍리 초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가를 짓는 기능이 뛰어난 장인으로 목공(木工), 석공(石工), 토공(土工), 모공(茅工) 보유자를 무형문화재로 보유자로 지정해서 보전</li> <li>초가집 짓는 과정은 정초하기, 기둥박기, 지붕틀, 지붕잇기, 외벽, 천장, 내벽쌓기, 마루넣기, 구들넣기인데 달구로 정초를 한 후 가장 가운데에 박는 생깃기둥, 포깃기둥, 두리목기둥을 박고, 포깃 기둥 위에 대들포를 걸치고, 포깃의 1/4 과 3/4 지점에 동자를 세운 후 종포를 걸침</li> <li>대들포와 외부새에 곱은 나무 지들포를 걸치는데 종포 중</li> </ul>

종목	개요
제19호 성읍리 초가장	<p>앙에 대공을 세우고 상 모루를 수평으로 걸쳐 기둥, 도리, 보를 맞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나무나 장작을 팔모로 깎아서 서리와 직각방향으로 걸치는 것을 ‘서실목’이라 하며, 추녀를 건 다음 서리를 네 귀퉁이에 걸고 서리 끝에 평고대를 박아 서실을 검</li> </ul>
제20호 제주시 창민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목의 관기로부터 불러 전해지던 창민요 15수, 성읍 지역의 창민요와는 가락이 느려서 창법상 변별성이 있음</li> <li>15수 중 ‘제주길군악’, ‘제주 삼마등등 사랑가’, ‘계화타령’, ‘제주동풍가’, ‘영주십경가’, ‘용천검’, ‘제주자진 사랑가’, ‘너영나영’, ‘스님타령’, ‘이야홍타령’, ‘제주시집살이타령’, ‘신목사타령’, ‘술학타령’ 13수임</li> </ul>

### (3) 전승자 현황

#### ○ 제1호 해녀노래

구 분	성명	직업	건강상태	전수능력
보유자	강등자	해녀	양호	양호
보유자	김영자	해녀	양호	양호
전수장학생	고연옥	해녀	양호	양호
	강경자	예술단장	양호	양호
	안미선	해녀	양호	양호

#### ○ 제2호 영감놀이

구 분	성명	직업	건강상태	전수능력
조교	오춘옥	무속인	양호	양호
전수자	이영숙	국악인	양호	양호
전수자	한유심	국악인	양호	양호

#### ○ 제3호 성읍민속마을 오메기술

구 분	성명	직업	건강상태	전수능력
보유자	김을정	문화재 보유자	양호	양호
조교	강경순	전수교육	양호	양호



○ 제5호 송당리마을제

구 분	성명	주 소
보유단체	송당리마을제보전회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265-1번지

○ 제6호 남읍리마을제

구 분	성명	주 소
보유단체	남읍리마을제보전회	제주시 애월읍 남읍리

○ 제7호 덕수리불미공예

구 분	성명	직업	건강상태	전수능력
보유자	윤문수	농업	양호	양호
조교	송해진	농업	양호	양호
전수장학생	송형수	농업	양호	습득중
	이창욱	농업	양호	습득중

○ 제8호 정동별립장

구 분	성명	직업	건강상태	전수능력
보유자	홍달표	농업	고령	양호
조교	홍월순	농업	양호	양호
조교	홍양숙	전수일	양호	양호

○ 제9호 방앗돌굴리는 노래

구 분	성명	직업	건강상태	전수능력
보유자	김영남	농업	양호	양호
조교	김동운	농업	양호	양호
전수장학생	강명언	농업	양호	양호
전수장학생	구복희	농업	양호	양호

○ 제10호 멸치후리는 노래

구 분	성명	직업	건강상태	전수능력
조 교	한성복	상업	양호	양호
전수장학생	한희복	가정주부	양호	양호
전수장학생	이춘복	농업	양호	양호

○ 제11호 고소리술

구 분	성명	직업	건강상태	전수능력
보유자	김을정	보유자	고령	양호
전수교육조교	김희숙	보육업	양호	양호

○ 제12호 고분양태

구 분	성명	직업	건강상태	전수능력
보유자	송옥수	전수활동	고령	어려움
조교	고양진	전수활동	양호	양호
전수장학생	홍선행	전수활동	양호	양호

○ 제13호 제주큰굿

구 분	성명	직업	건강상태	전수능력
전수조교	서순실	무속인	양호	양호
이수자	이승순	무속인	양호	양호
이수자	오용부	무속인	양호	양호
이수자	정태진	무속인	양호	양호
이수자	양창보	무속인	양호	양호
이수자	강대원	무속인	양호	양호
이수자	정공철	무속인	양호	양호
이수자	오춘옥	무속인	양호	양호

○ 제14호 제주도 옹기장

구 분	성명	직업	건강상태	전수능력
보유자	신창현	농업	양호	양호
보유자	이윤옥	농업	양호	양호
보유자	강신원	농업	양호	양호
보유자	고원수	농업	양호	양호

○ 제15호 제주불교의식

구 분	성명	직업	건강상태	전수능력
보유자	문명구	스님	양호	양호
전수장학생	김상욱	이도이동433, 성심사(스님)	양호	양호
전수장학생	현민숙	하례리62-4(보타사)	양호	양호

○ 제16호 제주농요

구 분	성명	직업	건강상태	전수능력
전수교육조교	김향옥	상업	양호	우수
전수장학생	김향희	음악학원경영	양호	우수

○ 제17호 진사대소리

구 분	성명	직업	건강상태	전수능력
보유자	진선희	농업	양호	양호
전수교육조교	강순아	농업	양호	양호
전수장학생	김명순	농업	양호	양호

○ 제18호 귀리 걸보리 농사일소리

구 분	성명	직업	건강상태	전수능력
보유자	하귀2리 민속보전회			

○ 제19호 성읍리 초가장

구 분	성명	직업	건강상태	전수능력
보유자	현남인	목공	양호	양호
보유자	강창석	석공	양호	양호
보유자	강임용	모공	양호	양호

○ 제20호 제주시 창민요

구 분	성명	직업	건강상태	전수능력
보유자	김주산	상업	양호	양호

(4) 전수 교육

종목	전수교육
제1호 해녀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옥희, 김옥희, 한천희 김신하 등 참여</li> <li>• 구좌읍 행원리 &lt;해녀노래 전승관&gt;에서 전수활동 하고 있음</li> </ul>
제2호 영감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큰굿보전회 회원들과 비정기적으로 연물 연습을 하고 있으나 전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전승교육이 필요한 상황</li> </ul>

종목	전수교육
제3호 성읍민속마을 오메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일자를 정하지 않았으나, 행사 참여시 전수교육</li> </ul>
제5호 송당리마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4회(음력 1월 13일) 신과세제를 행함</li> <li>• 의례진행 과정에서 자연스런 교육 활동</li> </ul>
제6호 남읍리마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제 집전 행사시 제례에 동참하여 집행</li> </ul>
제7호 덕수리불미공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전수교육 체제 없으나 행사 참여시 전수 활동</li> </ul>
제8호 정동별립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달에 두 차례 이상 교육</li> </ul>
제9호 방앗돌굴리는 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덕수리 소리패 (2007년) 구성으로 12명 전수교육</li> <li>• 안덕면 노인대학에서 한 달에 한번 노동요 교육</li> </ul>
제10호 멀치후리는 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주일에 4시간 교육</li> <li>• 전수생으로 김공숙, 김공실, 부재순 등 참여</li> </ul>
제11호 고소리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일자를 정하지 않았으나, 행사 참여시 전수 교육</li> </ul>
제12호 고분양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교에 의해서 매주 1회 집안에서 도제식으로 진행</li> </ul>
제13호 제주큰굿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시 참여, 의례 집행하면서 전수 교육</li> </ul>
제14호 제주도 옹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교육도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험 및 시연</li> <li>• 매월 일회 시연, 교육 예정</li> </ul>
제15호 제주불교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주마다 일반 전수생 10명 지도</li> </ul>
제16호 제주농요	<p>- 20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3월~5월)</li> <li>• ‘무형문화재 전승체험강습’ (제주시 무형문화재전수회관)</li> <li>• 제주시청 ‘제주시 전통학교 강의’ (4월~11월)</li> <li>• 제주도청 ‘제주농요 전승강의’ (5월~11월)</li> <li>• 제주문화재지킴이 지도교사 직무연수 ‘제주농요’ (7월 28일)</li> </ul> <p>- 20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무형문화재전승체험강습’, 제주시 무형문화재전수회관(5월~7월)</li> <li>• 제주시청 ‘제주시 전통학교 강의’ 제주시 무형문화재전수회관(5월~10월)</li> <li>• 제주도청 ‘제주농요전승강의, 제주농요전수교육관, (5월~10월)</li> <li>• 제주문화재지킴이 지도교사 직무연수 ‘제주농요강의’ (7월 26일)</li> <li>• 제주동광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강의(3월~10월)</li> <li>• 한동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강의(3월~10월)</li> </ul>
제17호 진사대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주 월화 2-4시간 교육</li> <li>• 교육내용은 김매는 소리류인 ‘진사대’와 ‘제주민요’ 전반</li> <li>• 애월읍 남읍리 마을 복지 회관 이용 전수교육</li> </ul>

종목	전수교육
제18호 귀리 곶보리 농사일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수교육관 개관 이후 부녀회 난타, 사물놀이, 민요교육 등 진행</li> <li>• 강덕심, 강노성 선소리 구연</li> <li>• 강초아, 이경성, 양순옥 등 참여</li> </ul>
제19호 성읍리 초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교육 훈련 없으나 행사시 참여 활동</li> </ul>
제20호 제주시 창민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1회 3시간 교육 (노래와 동작 등)</li> <li>• 전수자 김채현, 이숙자 외 7명</li> </ul>

(5) 전승공연 및 시연

종목	전승공연 및 시연
제1호 해녀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라문화제 공개행사, 해녀박물관 매주 토요일 공연</li> <li>• 노인 민속행사 등 참가</li> </ul>
제2호 영감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 와홀 만덕사에서 영감놀이 공연(2011년 가을/정공철, 강대원, 김평수, 한유심, 이영숙, 이연실, 송영미 등 참여)</li> <li>• 제주큰굿 마지막 제장에서 영감놀이 공연(2011년 10월 중순/주관 : 제주KBS)</li> <li>• 제주큰굿 마지막 제장에서 영감놀이 공연(2012년 9월/주최 : 탐라대전 추진위원회, 주관: 제주전통문화연구소, 후원 : 제주도청, 큰굿보전회, 장소 : 성읍리 마방집)</li> </ul>
제3호 성읍민속마을 오메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라문화제, 성읍민속마을 축제 참여</li> </ul>
제5호 송당리마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해 음력 1월 13일 신과제제 거행</li> </ul>
제6호 남읍리마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해 정월 정(丁)일 포제(酬祭)행사 집전</li> </ul>
제7호 덕수리불미공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덕수리 민속축제, 탐라문화제 전통문화 재현 참가</li> </ul>
제8호 정동별립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CC행사 등 각종행사 참여</li> <li>• 탐라문화제 전통문화 재현</li> <li>• 2012 전승공예대전 특상 수상(국립민속박물관 전시)</li> </ul>
제9호 방앗돌굴리는 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라대전, 서귀포칠십리축제</li> <li>• 최근 2012 전국민속경연대회(경상북도 김천) “답다우는 소리” 참가 동상 수상</li> </ul>
제10호 멀치후리는 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민요 공연, 김녕 동부 보건소에 한 달에 한번 공연</li> </ul>
제11호 고소리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라문화제, 성읍민속마을 축제 참여</li> </ul>

종목	전승공연 및 시연
제12호 고분양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라문화제 공개행사 등 참가</li> </ul>
제13호 제주큰굿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라문화제 전통민속행사 참가</li> <li>• 2011. 10 제주큰굿 재현(주관 : 제주KBS)</li> <li>• 2012. 09 제주큰굿 재현(주최 : 탐라대전 추진위원회, 주관 : 제주전통문화연구소, 후원 : 제주도청, 큰굿보전회)</li> </ul>
제14호 제주도 옹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라문화제 공개행사 참가</li> </ul>
제15호 제주불교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불교의식 무형문화제 공개행사 및 천도재 행사 시 참가</li> <li>• 탐라문화제, 유등축제, 한라산영신제에 참가</li> </ul>
제16호 제주농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li> <li>• ‘제4회 전통문화향연’ &lt;제주농요전승을 위한 정기공연&gt;(9월 24일)</li> <li>• ‘제50회 탐라문화제 제주농요공개공연’ 탐동해변공연장(10월 9일)</li> <li>• ‘제주해녀축제’ 제주농요공연 해녀박물관 특설무대(10월 16일)</li> <li>• ‘제7대 자연경관선정기념문화축제’ 제주농요공연(제주시청 특설무대, 12월 17일)</li> <li>- 2012</li> <li>•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 ’ 제주농요공연’ 새별오름(2월 03일)</li> <li>• ‘제5회 故이명숙명창 제5주기 추모공연’, 문예회관대극장(6월 10일)</li> <li>• ‘제주WCC 자연보전총회 한식문화축제 제주농요공연’ (9월 07일)</li> <li>• ‘제51회 탐라문화제 공개공연’, 이호해변특설무대(9월 17일)</li> </ul>
제17호 진사대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라문화제 행사, 노인의 날 행사 참가</li> </ul>
제18호 귀리 걸보리 농사일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행사, 들불축제 참가</li> <li>• 탐라대전 참가하여 전통시연 최우수상 수상</li> </ul>
제19호 성읍리 초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골 민속축제, 탐라문화제 행사 등에 참여</li> </ul>
제20호 제주시 창민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라문화제 재현행사</li> <li>• 동양음악학 국제학술행사 시연</li> </ul>

(6) 전승보전 관련 문제 제기

- 보유자 및 전수자 확보
- 전승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전수관의 정상적인 운영
- 대중화, 세계화를 위한 전승기반 확보 및 활성화
- 적극적인 전수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

종목	전수교육에 대한 문제점
제1호 해녀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녀노래는 제주뿐만 아니라 전도적으로도 중요한 노래인 만큼 보유자의 전수 교육 조교 지정 및 전수 장학생 확보 시급함</li> <li>•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와 해녀노래 공연 등을 통해 전수</li> <li>• 해녀노래는 해녀들의 생업, 신앙과 함께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되도록 전승기반을 확고히 하여야 함</li> </ul>
제2호 영감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감놀이’와 ‘제주큰굿’을 별개로 보지 않고 놀이와 의례를 굿이라는 맥락에서 전수체계 마련</li> <li>• &lt;영감놀이&gt;와 그 외 다수 전해져오는 굿놀이를 &lt;심방굿놀이&gt;로 명칭 변경, 도 문화재로 재편</li> </ul>
제3호 성읍민속마을 오메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읍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용으로 기능전수 활성화</li> <li>•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지원</li> <li>• 보유자 고령으로 명예 보유자 지정이 요망 됨</li> </ul>
제5호 송당리마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들의 본향당 및 당신(백주또 할머니)에 대한 인식과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li> <li>• 마을 무형문화유산과 더불어 통합적 전승 보전마련</li> </ul>
제6호 남읍리마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마을제는 잘 치러지고 있으나, 지역민에 의한 유교의례 전승 기반 마련</li> </ul>
제7호 덕수리불미공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유자 고령으로 명예 보유자 지정이 필요함</li> <li>• 전통 생산, 유통, 공예품 제작기법 전수와 창작품에 대한 상품화 및 지적재산화</li> </ul>
제8호 정동별립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된 작품 지적재산화, 상품화</li> <li>• 정동모자 재료 등 확보 방안마련</li> </ul>
제9호 방앗돌굴리는 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덕수마을 무형문화유산」 등 범위 확대로 마을 중심의 전수체계 확립</li> <li>• 민속공연장 적극적 활용과 공연프로그램 운영 기대</li> </ul>

종목	전수교육에 대한 문제점
제10호 멀치후리는 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수교육을 하기 위한 장소 미비 및 공간 협소</li> <li>• 보유자 지정 등으로 체계적인 전승기반 조성</li> </ul>
제11호 성읍민속마을 고소리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용 및 전수생 확보로 기능 전수</li> <li>•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교육프로그램에 설정 및 예산 지원</li> <li>• 보유자 고령으로 명예보유자 지정</li> </ul>
제12호 고분양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유자 고령으로 실제 전수 교육은 조교에 의해서 진행, 명예보유자 지정 시급</li> <li>• 전수생 등 확보로 전승기반 구축</li> <li>• 국가지정 관모공예와 공동 전수체계 마련 및 대내외 홍보</li> </ul>
제13호 제주큰굿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적·재정적으로 안정된 전수 기반을 확고히 할 필요성이 있음</li> <li>• 실제 큰굿의례 집행 실태 등 조사</li> <li>• 큰굿의 특성상 보유자를 분야별로 복수 지정할 필요가 있음( 의식, 기폐, 놀이)</li> <li>• 큰굿을 행할 기회가 적음</li> <li>• 보전회 결성과 외부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전승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li> <li>• 큰굿은 제주무속의 집합적인 의례이고 종합적인 연희로서 제주굿의 원형을 잘 간직</li> <li>• ‘본풀이’는 사설을 통하여 제주도 사람들의 인생관·우주관·자연관을 비롯한 삶의 지혜 및 제주 특유의 정신문화가 담겨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록유산 혹은 국가지정 무형문화유산 지정 이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li> </ul>
제14호 제주도 옹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수관 기능 활성화</li> <li>• 단체종목에 따른 보유자 지정으로 전수체계 확보 및 개별 보유자 지정</li> </ul>
제15호 제주불교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교의 예수제 (3일)를 포함한 &lt;제주불교의식&gt;을 국가지정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li> <li>• 일반전수생을 전수장학생으로 충원</li> </ul>
제16호 제주농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전수교육이 있으나 농업노동요 현상이 사라져 전승 보전 기반이 약함</li> <li>• 보유자 타계로 조교의 적극적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li> <li>• 농업노동요 혹은 민요무형문화유산 공동 전승체계로 범위를 확대하여 전승보전</li> </ul>
제17호 진사대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노동요 혹은 민요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전승 체계 마련</li> </ul>



종목	전수교육에 대한 문제점
<p>제18호 귀리 곶보리 농사일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보유자,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지정 등 개별지정 필요</li> <li>• 단체 운영 전승지원금으로 관리 운영</li> <li>• 지신밟기 등의 후원금을 이용하여 민속보전회 운영</li> <li>• 전수관 관리 요원 및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li> <li>• 귀리곶궁(탐라문화재 대상), 귀리 곶보리 농사일소리(전국 민속경연대회 대상) 등 지역주민 모두가 합심하여 민속공연을 창작하고 전승보전하기 위한 노력</li> <li>• 행사 참여와 전수 활동에 적극적 지원 요망</li> </ul>
<p>제19호 성읍리 초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지정으로 각 기능인 보유자 및 전수조교들의 전수교육 의지가 있으나 교육 참여 방법이 어려움</li> <li>• 2012년 국가장인으로 지정됨</li> <li>• 고령이어서 조교 등 지정으로 전승보전 체계 마련</li> <li>• 성읍 민속마을 무형문화유산으로 확대 지정하여 공동으로 전승보전 하기위한 기반 마련</li> </ul>
<p>제20호 제주시 창민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 및 공연 공간 마련</li> <li>• 전수생을 전도 단위로 모집하여, 제도권에서 교육의 기회 제공</li> <li>• 제주민요의 원형 전수 및 현대 퓨전 음악창작, 발전적 진흥을 위한 계기 마련</li> </ul>

### Ⅲ. 설문조사 결과

#### 1. 조사 개요

- 현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지정과 전승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승 범위를 확대하여 제주적인 무형유산 전승제도 마련으로 확고한 전통 문화 보전과 진흥책을 마련하기 위함
-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입안가능성 및 무형문화재 정책과 관련하여 새로운 도약의 계기 마련
- 공적 교육의 전승방안 강구를 위한 전승자의 입장과 지식 재산권 공적 인증방안, 지원금 활용 등에 관련 사항
- 무형문화재 용어 변경 및 범주 확대,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 사항
- 보유자 인정 심사, 이수증 발급체계 정비, 전승자 권익보호, 단체종목 활성화 등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에 관한 사항
- 무형문화재보유자들이 문화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전승보전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 결여에서 오는 한계점이 있으나 일대일 면접으로 극복함

#### 2. 조사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국가 및 도지정무형문화재 24건
- 현 지정무형문화재 전수자 및 전문가 등 80명

#### 3. 조사 기간

- 2012. 10. 1 ~ 2012. 10. 31(1개월 간)

## 4. 조사 방법과 내용

- 설문문항 작성으로 개별조사
- 설문조사 내용
  - 현행문화재 보호법에 대한 만족도
  -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제도
  - 무형문화유산법 지정과 중요성
  - 기존의 무형문화재법에 추가 종목
  - 전승 관련(활동시간, 전수조교, 전승금) 희망 사항
  - 제도개선(종목운영, 제도권 교육, 보전가이드 라인 마련, 이수증, 대중화, 지적 재산권, 소관기관 등)

## 5. 조사 내용과 분석 결과

### 가. 현행문화재 보호법에 대한 만족도

#### (1) 현행 문화재 보전과 전승제도에 대한 만족도

<표Ⅲ-1> 현행 문화재 보전·전승제도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보유자	4	8	8		20 (25%)
전수조교	6	12	2		20 (25%)
전수장학생	6	6	22		34 (42.5)
기타		2	4		6 (7.5%)
합계	16(35%)	28(35%)	36(45%)	0	80

- 현행 문화재보전과 전승제도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는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가 35%(28명), 다소 불만족 한다는 45%(36명)의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현행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와 관련하여 대체로 불만족하고 있음
- 불만족의 이유로는 1) 원형훼손이 많이 되었다는 점(보유자), 2) 전수 전승자 인정제도 개선 및 전승지원금의 현실화 (전수조교), 3) 전승제도 및 체계에 대한 행정적·제도적인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전수장학생)이 있고, 4)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무시되고 행정지원이 미비점을 들고 있음

## (2)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제도

<표Ⅲ-2>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제도

선택지	보유자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기타			합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 공개 행사 비용지원 제도	4	6		2	2	2	4	4	12	4			40(16.6%)
(2) 공예종목 행사비 지원 및 작품 구입 제도		2	2	4	2		2	2	4	2	2		22(9.1%)
(3) 무형문화유산 범위와 재분류	2		4			2	2	6				2	18(7.5%)
(4) 무형문화재 전승자 인정·선정 제도	4	6	4	8	6		6	4	4		2		44(18.3%)
(5) 무형문화재 지정 제도			2	2	6	4	4					2	20(8.3%)
(6) 월정 전승지원금 지급	6	2	4	2		4	8	12	6			2	46(19.1%)
(7)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제	4	4	2	2	4	2	8	6	6		2		40(16.6%)
(8) 이수증 발급 제도			2			6			2				10(4.1%)
(9) 기타													0
(10) 무응답													0
												240	

- 현재 문화재 법과 관련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제도 제1순위는  
 1) ‘무형문화재 전승자 인정·선정 제도’가 22.5%(18명)이며 2) 월정 전승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20%(16명), 3) ‘공개행사 비용지원 제도’ 17.5%(14명)이고 4) ‘전수교육관 건립’이 17.5%(14명)인데 무형문화재 전승자 인정·선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제도 2순위에서는 1)무형문화재 전승자 인정·선정제도 22.5%(18명)이고, 전수교육관 건립지원제는 20%(16명), 3)월정 전승지원금 지급제도 17.5%(14명), 4)공개행사 비용지원 제도 15%(12명), 5)무형문화유산 범위와 재분류 7.5%(6명), 6)무형문화재 지정제도 7.5%(6명)로 나타나고 있음
-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제도 3순위에서 1)월정 전승금 지급제도는 20%(16명), 2)공개 행사 비용지원 제도는 17.5%(14명), 3)이수증 발급제도는 12.5%(10명), 4)무형문화재 지정제도 10%(8명)로 나타나고 있음
- 보유자 그룹의 개선 제도에 대해서는 1)문화재 전승자 인정·선정 제도 17.5%(14명), 2) 월정 전승지원금 지급제도 15%(12명), 3) 공개행사비용지원 제도 12.5%(10명), 4)전수교육관 건립지원제도 12.5%(10명)로 나타나고 있음
- 전수교육 조교 그룹인 경우도 1)무형문화재 전승자 인정·선정제도 17.5%(14명), 2)무형문화재 지정제도 15%(12명), 3)전수교육관 건립지원 10%(8명), 4)전수장학생 그룹인 경우 월전승지원금 지급제도 32.5%(26명), 5)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제도 25%(20명), 6)공개행사비 지원 25%(20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나. 무형문화유산법 지정과 제도 개선 관련 조사

### (1) 무형문화유산법 지정 문제

<표Ⅲ-3> 무형문화유산법 지정의 적절성

	보유자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기타	합계
매우적절	12	4	6	4	26 (32.5%)

	보유자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기타	합계
적절	4	12	10	2	28 (33%)
잘 모르겠음	4	4	16	2	24 (30%)
부적절	4	2	2		2 (2.5%)
					168

- 무형문화유산법 지정의 적절성에 대하여 1)매우 적절하다가 32.5%(26명) 이고 2)적절하다는 35%(28명), 3)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0%(24명), 4)부적절하다 2.5%(2명)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정확한 판단과 가치기준으로 제주의 무형문화재에 맞는 입법과정을 요구함

## (2) 무형문화유산법 개정의 중요도

<표Ⅲ-4> 무형문화유산법 개정의 중요도

선택지	보유자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기타			합계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무형문화유산 범위 확대 및 재분류	4		4	4			8	6	6	2		2	36 (15%)
(2) 무형문화유산 보전원칙 재정립(현행유지)	6	2		4	6		10	6		2	2		38 (15.8%)
(3) 무형문화유산 전승지원금 제도 개선		6			2	4	4		4		4		24 (10%)
(4) 무형문화유산 종목 지정제도 개선			2	4			4		6				16 (6.6%)
(5) 무형문화유산 경제적 가치 제고	2				6	2			4				14 (5.8%)
(6) 무형문화유산의 공연 및 판매 기회 확대	2	10	4	4	2	6		8	4				40 (16.6%)
(7)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		2	6	4		6	4		6	2		2	32 (13.3%)
(8) 무형문화재 전승자 인정제도 개선	6		4		4	2	4	14	4			2	40 (16.6%)
(9) 기타													0
(10) 무응답													0
													240

- 무형문화유산법 개정 중 가장 중점을 두어야하는 분야 1순위는 1)무형문화유산 보전원칙 재정립 27.5%(22명), 2)무형문화유산 범위확대 및 재분류 22.5%(18명), 3)무형문화재 전승자 인정제도 개선12.5%(10명), 4)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 12.5%(10명)를 원하고 있음
- 2순위는 1)무형문화유산의 공연 및 판매 기회 확대가 25%(20명), 2)무형문화재 전승자 인정제도 개선 22.5%(18명), 3)무형문화유산의 보전원칙 재정립 20%(16명)을 원하고 있음
- 3순위는 1)무형문화유산 세계화 25%(20명), 2)무형문화유산의 공연 및 판매 기회 확대 17.5%(14명), 3)무형문화재 전승자 인정제도 15%(12명), 4)무형문화유산의 범위 확대 및 재분류 15%(12명)로 나타나고 있음

**(3) 추가시켜야 할 종목**

〈표Ⅲ-5〉 무형문화유산 추가 종목 (중복)

선택지	보유자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기타	합계
구전문학과 설화	2	4	2		8 (6.89%)
궁중의례	4				4 (3.44%)
민속놀이	6	8		4	18 (15.51%)
명절풍습	4		4	4	12 (10.34)
전통 스포츠 또는 전통놀이		2	2		4 (3.44%)
전통 의식주(한복, 온돌)	6	6	4		16 (13.79)
전통 의학	2				2 (1.72%)
전통지역축제와 의식	6	10	8	4	28 (24.13%)
한글 또는 지역방언(사투리)	10	6	4	4	24 (20.68%)
기타					0
무응답					0
					116

- 무형문화유산 등 지정에서 추가시켜야 할 종목은 1)전통지역축제와 의식 24.13%(28명), 2)한글 또는 지역방언 사투리 20.68%(24명), 3)민속 놀이 15.51%(18명), 4)한복과 온돌 13.79%(16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4) 전승 활동 시간

<표Ⅲ-6> 전승 활동 시간

선택지	보유자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기타	합계
04~08시간(주 1일 이내)	10	12	28	4	54 (67.5)
08~16시간(주 1~2일)			6		6 (7.5%)
16~24시간(주 2~3일)		6			6 (7.5%)
24~32시간(주 3~4일)				2	2 (2.5%)
32~40시간(주 4~5일)	4				4 (5%)
40시간 이상(주 5일 이상)	4	2			6 (7.5%)
기타					0
무응답	2				2 (2.5%)
					80

- 전승활동 시간에 대해서는 주 1일 이내 4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교육을 67.5%(54명)가 원하고 있음

#### (5) 보유자별 전수조교의 적정 인원

<표Ⅲ-7> 전수조교의 적정 인원

선택지	보유자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기타	합계
1명	6	6			12 (15%)
2명	4	4	10	2	20 (25%)



선택지	보유자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기타	합계
3명	4	2	10		16 (20%)
4명				2	2 (2.5%)
종목에 따라 차등	6	8	10	2	26 (32.5%)
불필요하다			4		4 (5%)
기타					0
무응답					0
					80

- 보유자별 전수교육을 담당하는 조교의 적정 인원은 1)종목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한다가 32.5%(26명)이고, 2) 2명이 가장 적정하다 25%(20명)로 종목에 따라 차별을 둘 필요성을 제기함

**(6) 전승지원금 용도에 대한 의견**

<표Ⅲ-8> 월 전승지원금의 바람직한 사용에 대한 의견

선택지	보유자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기타	합계
생활비로 사용					0
전수교육에 사용	4	12	6	2	24 (30%)
행사 및 활동에 사용	4	2			6 (7.5%)
생활비 및 교육 활동에 1/3씩 사용	4		18	2	24 (30%)
교육과 활동에 각각 절반씩 사용	6	6	10	2	24 (30%)
잘 모르겠다					0
기타					8 (10%)
무응답					0
					80

- 월 전승지원금의 바람직한 사용용도는 1)전수교육에 쓰이기를 원하는 경우 30%(24명), 2)교육과 활동에 절반 씩 30%(24명), 3)교육과 활동에 (1/3)씩 사용하는 것 30%(24명)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음

### (7) 제도 개선의 우선 순위

<표Ⅲ-9> 제도 개선의 우선 순위

선택지	보유자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기타			합계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① 단체종목 운영 개선	6				2								8(4.8%)
② 대학교육을 통한 무형유산전승체계도입(도제식→제도권)	4												4(2.4%)
③ 무형문화유산 연구원 설립		4					8					2	14(8.4%)
④ 무형문화유산의 기록 보전	6	8		6			8			4			32(19.27%)
⑤ 무형문화유산의 대중 교육					8		4	8		2			22(13.25%)
⑥ 보유자 충원 통로 개방				4							2		6(3.6%)
⑦ 보유자 연령제 도입				2									2 (1.2%)
⑧ 원형보전 가이드라인 마련					2		4				4		10(6.02%)
⑨ 이수증 심사 및 발급제도 개선							2	4					6(3.61%)
⑩ 자생 종목과 취약 종목 구분하여 지원 차등화							4						4(2.4%)

선택지	보유자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기타			합계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⑪ 전수조교 제도 개선		4			4							2	10(6.02%)
⑫ 전승활동 지원 강화				8	4		2	10				2	26(15.66%)
⑬ 전승활동 평가 강화							2						2(1.2%)
⑭ 지정 및 인정의 전문성 제고(공예/예능분과 분리)								4					4(2.4%)
⑮ 기타(전통공예원 설립 제작작품판매 증대 방안)	4												4(2.4%)
무응답		4						8					12
0												166	

○ 제도 개선의 첫째로는 무형문화유산 기록보전의 중요성 19.27%(32명)과 2순위로는 1)무형문화유산의 대중교육 13.25%(22명), 2)전수활동 지원강화 15.66%(25명)를 들고 있음

**(8) 무형문화재의 관리와 지원 소관기관에 대한 의견**

<표Ⅲ-10> 무형문화재의 소관기관에 대한 의견

선택지	보유자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기타	합계
중앙정부(문화재청)	4	6	4	2	16 (20%)
지방자치단체	4				4 (5%)
현행과 같이 시도지정 및 국가지정 문화재로 구분하여 관리	12	14	30	4	60 (75%)

선택지	보유자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기타	합계
기타					0
무응답					0
0					80

- 무형문화재 관리와 지원에 적합한 소관기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75%(60명)가 시, 도지정 및 국가 지정 문화재로 구분하여 관리를 바라고 있음

### (9) 지식재산권의 필요성

〈표Ⅲ-11〉 무형문화재 예·기능의 지식재산권

선택지	보유자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기타	합계
필요하지 않음		2			2(2.5%)
필요함	14	14	18	4	50(62.5%)
잘 모르겠음	6		10	2	18(22.5%)
기타					0
무응답		4	6		10(12.5%)
					80

- 지식재산권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으로는 1)필요하다가 62.5%(50명), 2) 잘 모르겠다가 22.5%(18명)로 나타나고 있음
  - 필요한 이유로 1)문화재적 가치 기능 등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하고 2)전승자로서 긍지를 갖고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고 있음
- 위의 설문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조사 내용과 분석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Ⅲ-12> 설문조사 내용과 분석 결과

현행문화재 보호법	현행 문화재 보전과 전승제도에 대한 만족도	대체적으로 만족(35%) 다소 불만족(45%)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제도	인정·선정 제도(22.5%) 월정 전승지원금 지급제도(20%) 공개 행사 비용지원 제도(17.5%)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제(17.5%)
무형문화재 지정과제도 개선 관련조사	무형문화유산법 지정의 적절성	매우 적절(32.5%) 적절(35%)
	개정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	무형문화유산 보전원칙 재정립(27.5%) 무형문화유산 범위확대 및 재분류(22.5%)
	무형문화재 등록에 추가시켜야 할 분야	전통지역 축제와 의식(24.13%) 한글 또는 지역방언(20.68%)
	전승활동 시간	주 1일 이내 4-8시간(67.5%)
	보유자별 전수조교의 적정 인원	종목에 따라 차등(32.5%) 2명이 적당 (25%)
	월전승지원금의 바람직한 사용용도에 대한 의견	전수교육에 사용(30%) 교육과 활동에 절반 혹은 1/3씩 (30%)
	개선이 시급한 제도	무형문화유산기록보전(19.27%) 전수활동 지원 강화(15.66%) 무형문화유산의 대중교육(13.25%)
	관리와 지원한 소관기관에 대한 의견	현행과 같이 시도지정 및 국가지정 문화 재로 구분하여 관리(75%)
지식재산권의 필요성	필요하다(62.5%)	

## 6. 시사점

- 현행 문화재법의 무형문화재 보전과 전승제도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고 문화재 전승제도에 대한 개선과 무형문화유산법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무형문화재 지정과 제도 개선 관련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유산으로의 지정 범위 확대 및 재분류를 위한 유사 종목간의 통합과 전승보전 체계가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마을지역 공동체 전승을 위해 민속연회나 축제, 의식, 한글, 지역방언 등 종목추가와 더불어 지역성을 살린 전승보전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무형문화재 지적재산권 확보로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고, 보유단체 지정으로 확고한 전승기반 마련이 필요함
- 전승지원금의 현실화, 전수교육관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 유치 및 설립이 필요함

## Ⅳ.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한 제도 보완

### 1. 보유자 충원 및 보유 단체 지원

#### 가. 보유자 충원

- 전수교육을 위한 종목보유자 지정 및 충원으로 전수활동 강화 필요
- ‘멀치후리는 노래’, ‘제주농요’ 등의 보유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전승의 문제점 제기
- 보유단체 보유자 지정
-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 ‘성읍리초가장’, ‘제주도옹기장’ 보전회의 법인화 및 보전회의 보유자, 전수조교 지정으로 적극적 전수활동 체제 마련

#### 나. 명예보유자 지정

- ‘성읍민속마을 오메기술·고소리술’, ‘정동별립장’, ‘불미공예’, ‘고분양태’ 등 보유자 고령으로 실제 보유자 전수 활동 교육이 어려움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명예보유자 선정하고 기·예능 전수 활동 강화를 위한 조교 지위 개선 강화

#### 다. 보유단체의 법인화와 전승비 지원

- 보유단체의 법인화와 현실적인 전승교육비 지원<sup>3)</sup>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재 지정이 형식적 수준에 그침
- 도 지정 단체종목인 경우 보유자와 전수조교에 대한 법적 지정과 전수교육 활동을 위한 전수교육비 지원으로 현실적인 전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3) 문화재청,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연구』, “중요무형문화재 단체 종목운영방안”, 인하대학교, 2011.

## 2. 전승범위 확대

### 가. 유사종목 통합으로 전승범위 확대

- 단일종목과 단수보유자 전승보전의 한계에 따른 유사종목 통합으로 전승범위를 확대
-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유산으로의 확대지정(법적 근거 요망됨)하고 복수종목 통합에 따른 복수보유자 선정
- 제주민요의 역사적·문화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인정, 전승 보전 체계 일원화
  - 제주민요(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 1989)
  - 해녀노래(도지정 제1호, 1971. 8. 26)
  - 방앗돌굴리는 노래(도지정 제9호, 1986. 4. 10)
  - 멀치후리는 노래(도지정 제10호, 1986. 4. 10)
  - 제주농요(도지정 제16호, 2002. 5. 8)
  - 진사대 소리(도지정 제17호, 2005. 10. 5)
  - 귀리 곶보리농사일 소리(도지정 제18호, 2007. 2. 28)
  - 제주시 창민요(도지정 제20호, 2009. 7. 29)
- 현존 민요 창자들을 활용하여 전승보전
  - 지정 종목의 보유자 이외 제주민요 가창자 활용
  - 지역별·기능별 가창이 유능한 자
  - 기지정된 전수장학생, 전수생 대상만이 아닌 학생 주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전승범위를 확대하여, 도민 대상으로 전수 활동이 이루어지는 체제 마련

### 나. 제주큰굿과 심방굿놀이 전승기반 마련

- 제주큰굿 유사종목 통합으로 전승기반 마련 및 복수보유자(의례, 기메, 놀이부) 지정
- 제주 심방굿놀이는 제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늠하게 하는 문화적 지표로서 제의적 요소보다 유희적 요소가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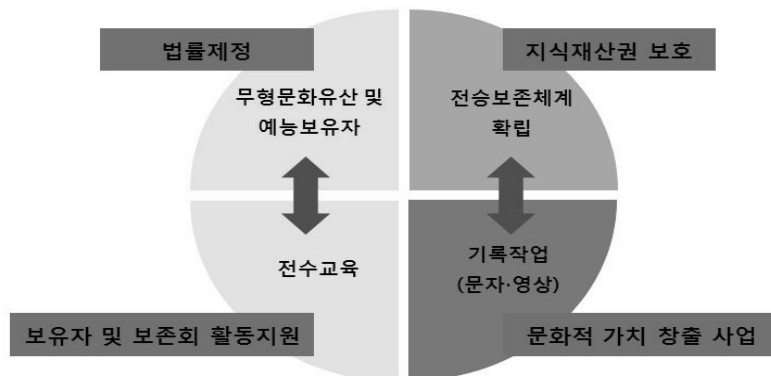


- 큰굿과 관련하여 ‘영감놀이’, ‘세경놀이’, ‘전상놀이’, ‘말놀이’, ‘용놀이’, ‘애기방울 뿜’ 등 심방굿 놀이 보전
- ‘영감놀이’ 를 ‘심방굿놀이’ 라는 종목으로 재편하고 보유자 및 전승조직을 재편하면서 지속 보전이 가능하게 함

### 3. 무형문화재 지식재산권 보호

- 무형문화재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을 인정을 위한 문화유산 가치화 작업 이후 저작권협회, 한국데이터베이스 등 국가공인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 무형문화재를 일정한 가치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예능보유자를 파악, 기초, 조사를 기반으로 현지 녹화 영상촬영으로 기록·보존하고 채보, 춤사위 무보 작업 등을 병행하여 보전
- 기록물(문자·영상)해설과 이에 따른 재영상화(재편집) 작업으로 지적재산권 인정 (제의, 예술, 놀이, 공예 등)
- 전통공예 등은 기·예능에 대한 인정제도를 실행하여 경제효과는 적지만 예술적 가치가 높고 전통을 잃어버릴 위기의 공예미술 품목 제작에 대해 지원<sup>4)</sup>

<그림Ⅳ-1> 보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식재산권 행사



4)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17호 조례 제16~17호(전통공예미술보호조례)」, 1997년 5월 20일 반포.

## V. 무형문화유산의 보전·진흥 방안

### 1. ‘제주해녀’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 등재

#### 가. 관련 법안 및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전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
  - 해녀문화 발굴·조사·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 마을어장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해녀문화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무형문화재 및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관한 사항
  - 해녀문화의 세계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해녀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
  - 해녀관련 각종 시책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등
- 5년마다 연동하여 수립하는 중장기계획
  - 2011~2015년(5개년)까지 추진계획에 대한 장기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정책의 일환
- 2012년 WCC 제주형 의제로 선정 됨
  - “독특한 해양 생태 지킴이,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을 제목으로 한 제주형 의제에서 해녀가 해양생태 관리자로서 해양생태계에 기여해 왔던 공을 인정하여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해녀문화 보전 방안 마련 및 국제적으로 정부·지방 차원에서 해녀공동체를 보호하고 고양시키기 위한 노력 촉구

#### 나. ‘제주해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적 가치 인정

- ‘제주해녀’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2003년 유네스코 32차 정기 총회에서 채택된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일명 ICH 협약) 취지에 그 타당성을 인정받음

- 유네스코의 ICH 협약 제2조의 ‘무형문화유산’ 이라 함은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이 문화유산의 관습, 재현, 표현, 지식, 기술 뿐 만 아니라 도구, 사물, 공예 및 문화공간 모두를 의미”
  - 해녀 무형 문화유산으로의 기술, 도구, 표현, 공간, 관습 등에서 구체적인 종목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생업과 문화유산의 총체적인 지정
- 해녀문화유산의 종목
  - 도지정 문화재 포함
    - 해녀노래(제주특별자치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호)
    - 제주해녀의 옷과 도구(제주특별자치도지정 민속자료 제10호)
  - 생업기술 및 지식적 가치
  - 해녀공동체 운영 및 규약
  - 공간
  - 무속 신앙

## 다. 무형문화유산 등재 절차

- 문화재청 용역 결과(2012. 01) 제주해녀 한국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 중 ‘우선 등재 추진 목록’ 상위권에 속함(전국 61개 확정)
- 문화재청 ‘한국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 고시’
-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도→문화재청→외교통상부→UNESCO 사무국)
- UNESCO 소위원회는 등재신청서 검토를 통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 ‘해녀’는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 라. ‘국가등록무형문화유산’ 국내법 지정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협약 등재의 필수적으로 ‘인벤토리 등재증명, 곧 국내법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Convention Guideline R.5)’는 조건 이행
  - 국가급 대표 목록 혹은 지자체 대표 목록 선정으로 보전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 문화재청은 우수한 전통문화를 구현하고 역사적·문화적·예술적·학술적으로 중대한 가치를 지니면서 보유자를 지정할 수 없는 무형문화유산은 국가등록 혹은 도(지자체)등록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을 위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안’ 마련 중
- 보유자를 정할 수 없는 대표 목록 전승방안으로 해녀문화는 ‘국가등록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 가능

## 마. 신청서 제출 및 네트워크 구축

-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 작성이 우선되어야 함
  - 유산의 정의 및 소개
  - 가시성 확보, 인식제고 및 대화 촉진에 기여
  - 보호조치
  - 공동체 참여 및 동의
  - 유산의 인벤토리 등재
  - 자료 : 고화질 최근 사진(사진 권리 양도서), 비디오 10분(권리양도서), 책, 기사, 시청각자료, 웹사이트
  - 당사국 대표 서명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대학, 민간단체(해녀문화보전회) 등의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함

## 바. 해녀양성으로 지속가능한 보전책 마련

- 40대 미만의 젊은 해녀들을 일정기간 교육 후 어촌계 영입으로 물질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장려금 지원
- 해녀수가 많고 바다 어장이 좋은 일정 어촌계의 유능한 해녀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젊은 해녀를 전수생으로 영입하여 해녀를 육성하고 문화보전
- 해녀 양성 교육 기관 등에 위탁을 통해 해녀육성

## 2. 성읍 민속마을의 무형문화유산 보전

### 가. 필요성

- 민속적 전통을 복원하고 효율적인 보전 관리와 활용에 대한 장기 계획을 마련 중
  - 문화재청, 2012, 『문화재 보전, 관리, 활용 5개년 기본계획 2012-2016』에 의함
  - 제주민요, 고소리술, 오메기술, 성읍리 초가장 등 성읍의 무형문화유산을 국가중요무형유산 지정 및 전승보전 활성화
  -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용 공연, 전시, 교육 대내외로 홍보하는 무형유산의 전당

### 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

- 유네스코의 보편적 가치 평가에서 본 성읍의 무형유산적 가치 대내외 선양
-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명이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
  - 제주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풍부한 유·무형의 문화유산 간직
  - 제주초가, 제주민요, 오메기술, 고소리술, 천연기념물, 옛 읍성과 돌하르방, 민간신앙, 민속자료와 무형유산이 잘 남아있음
-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예증하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경관의 탁월한 사례임
  - 국가지정중요민속자료(제188호) 성읍민속마을과 조일훈, 고평오, 이영숙, 한봉일, 고상은 초가 가옥이 있음
- 전통적 정주지(定住地)나 토지이용, 해양이용을 예증하거나 인간과 환경의 교섭
-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뛰어난 보편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

-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가 성읍을 중심으로 지정·보전
  - 정의현의 현청 소재지였으므로 관기들에 의해 전해지던 노래가 민간에 전승·전파
  - 농업노동요는 농사기능에 의해 조밭밟기, 김매기, 풀베기, 타작질 등의 작업과 같이 불리던 노래들임
  - 장례 의식요로 행상소리, 달구소리, 진토긋소리, 꽃염불 소리가 있음
  - 전통주 제조로 오메기술 제조기능은 1990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 보전
  - 고소리술 제조기능은 1995년 4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
- 전통문화로서의 세시풍속은 성읍 마을의 민속적인 기층 자산이므로 보전이 필요함
- 무속제의로 음력 7월 14일, 우마를 기르는 집에서는 말과 소의 증식을 위한 제사, 조와 메밀 농사에 해충 없이 풍년들기를 기원하는 제석제를 지냄

#### 다. 성읍민속마을의 무형문화유산

구 분	종 목	유형 및 내용	비 고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 (1989. 12. 1)	오돌또기	강문희
		산천초목	
		봉지가	
		맷돌노래(ㄱ레 ㄱ는 소리)	
(도지정 무형문화재)	오메기술 (무형3호)	오메기술 제조기능	김을정
	고소리술 (무형11호)	고소리술 제조기능	김을정
	초가장 (무형17호)	목공	현남인
		석공	강창석
		토공	김권업
모공		강임용	

구분	종목	유형 및 내용	비고
비지정 무형유산	성읍창민요	계화타령	현순옥
		질군악	강문희
		중타령	이창순
		용천검	송인선
		동풍가	이미생
	성읍들노래	밧블리는 소리 (밭밧는 노래)	지역주민
		홍애기 (김매는 노래)	지역주민
		출비는 소리 (꼴베는 노래)	지역주민
		도깨질 소리 (타작 소리)	지역주민
		방애짚는 소리(방아 소리)	지역주민
	장례의식요	행상소리 (느진 염불소리)	송순원
		행상소리 (자진 염불소리)	송순원
		진토긋소리	송순원
		달구소리	송순원
	집짓는소리	원달구 소리	송순원
		흙이기는 소리	송순원
		흙질 소리	송순원
	유교식 포제	정월, 정(丁)일 또는 해(亥)일	지역주민
	정소암화전놀이	정소암에서 봄날의 축제	지역주민
	정의골민속축제	10월 탐라문화제 기간에 치러지는 마을 축제 행사	지역주민
	무속신앙	큰굿, 마을 안할망 당제 등	지역주민
	결궁	정초, 공공기금 마련, 마을의 안녕기원	
	짚공예	짚풀, 죽공예	지역주민
세시풍속	12절기의 행사	지역주민	
의식주	돛통시	지역주민	
	갈옷, 수의 등		
	빙떡(정기), 범떡, 상외떡, 돌래떡, 모물 죽, 모물만디, 돼지고기, 오미자차		

## 라. 보전 및 개발 방안

- 국가지정중요민속자료인 ‘성읍민속마을’ 토박이 및 기초자료에 대한 기록화와 구전 자료조사를 통한 무형문화유산 현장 복원
- 사진 및 물건, 전승자료 발굴 인터뷰, 동영상 자료 확보 및 기록화
- 사이버 박물관 제작 무형유산 뿐만 아니라 민속마을 구조를 따라 동선을 설정하고 콘텐츠 자료 확보로 사이버 박물관 운용
- 민관 관리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분야별 관리 운영의 문제점 파악, 보전 관리에 적합한 관리 운영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민속마을의 효율적 운영 중심의 무형문화유산을 중점으로 삼는 계기 모색
-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전통적인 생활양식으로 생활할 수 있는 체험 콘텐츠 개발로 주민생활 편의시설 및 관광자원 기반 정비를 통해 전통 문화 체험의 거점화로 삼고 역사, 문화 관광 자원화 계기 모색

## 3. ‘제주무속의례 본풀이’ 전승 기반 마련

### 가. 필요성

- 무속은 전통문화의 기층을 형성하고 있고, 그 중 제주도 무속은 상대적으로 전통이 훼손되지 않은 채 전승되어 한국문화의 원형을 파악하는 길잡이가 됨
- 큰굿은 제주의 상위굿으로 무속의례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 제주큰굿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인정과 ‘본풀이’의 세계기록유산으로의 중요성을 인정
  - 신굿은 심방들의 전승체계(입무의례/전승방식/조직사회) 내에서 새심방 탄생의 의의와 굿법을 아는 심방(전문가)을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이 있음
  - 각 제차 성격에 맞는 신의 내력담(본풀이)을 굿 의례에 적용하며 본



풀이를 구연하는 가의 ‘본풀이의 암기와 해석력’이 큰 심방을 평가하는 기준임

- 유형으로는 신굿, 사가굿, 당굿, 마을굿 등이 있는데, 관용적으로는 ‘두이레 열나홀굿’ (10일~15일)이라고 하고 굿현장 자체가 살아있는 문 화유산임

## 나. 구성요소

- 큰굿 본풀이와 함께 제주무가인 열두본풀이(일반 본풀이)와 일월조상 본풀이, 당본풀이는 구전유산(구전전통 및 표현)적 가치가 있음
- 심방굿 놀이는 신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대본)와 연기로 풀어가는 굿 놀이(연희)로 영감놀이, 세경놀이, 전상놀이, 말놀이, 용놀이, 애기방울 풀 등
- 각 굿놀이는 그 자체의 완결된 극적 스토리와 제주 기층문화의 종교 관·자연관·생활관이 담겨있음
- 신화적·문화적 표현양식으로 큰대, 당클, 제상, 기메, 연물, 의상, 음식을 들 수 있음

## 다. 전수체계 구축 방안

- 큰굿의 성격과 규모를 감안할 경우 큰굿의 1인 지정 만으로는 불합리하다고 사료되어 복수 보유자 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큰굿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재정 부담 극복을 위해 공개행사비 지원으로 기술 전승이 가능하도록 함
- 큰굿 보전을 위한 노력
  - 큰굿 본풀이의 ‘구전 전통 및 표현’으로 구전 유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지정 무형문화유산 또는 기록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기반 마련
  - 정기적으로 제주큰굿 축제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마련하고, 영역별 보유자와 전수조교 지정 제도 구축

- 의례부(상차림, 본풀이)
- 기메부(기메, 당클, 큰대세움 등)
- 놀이부(굿 중의 모든 연희)

## 라. 무속 전승기반 마련

- 원형보전 가이드라인 마련
- 기록보전 활동
- 체계적 전승제도 가이드라인 구축
- 국내외 네트워크
- 전수 텍스트 개발의 필요성(전수교육 텍스트 부재)
- 전승기반 마련을 위한 제주심방 계보 및 전수조사 시급
- 무업 가능성과 경제성 분석을 통해 재정적 지원제도를 마련

## 4. 마을 민속연희 문화유산 지정 방안

### 가. 필요성

- 제주민요는 지역의 특성과 가창능력이 뛰어난 지역주민 유무에 따라 마을 단위별 소리판 재구성
  - 연희판, 소리판의 형성은 마을 민속연희와 공유하면서 마을의 정체성을 찾고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
  - 마을 별로 지역성이 있는 특장화 된 연희를 개발하여 마을 축제나 탐라문화제 등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면서 지속적으로 전통문화 전승의 세대 간 연결이 가능하도록 함

### 나. 마을별 민속연희 유형

- 마을 별 민속자원이 될 수 있는 민속연희
  - 해녀놀이 : 해녀노래(구좌읍 김녕, 행원, 종달, 하도)

- 테우만드는 놀이 : 낭꾼치는 소리, 낭내리는 소리, 대툽질 소리, 귀
- 자귀질 소리(대정읍, 서귀포시 보목동, 한림읍 귀덕리, 안덕면 상창리)
- 멀치후리는 노래 : 멀치후리는 노래, 서우젯소리(구좌읍 김녕리)
- 정소암 화전놀이 : 성읍창민요(표선면 성읍리)
- 방앗돌굴리는 노래 : 안덕면 덕수리
- 사또놀이: 상여소리, 꽃염불소리, 달구소리, 장례의식요, 영부소리(구좌읍 종달리, 남원읍 신례리, 제주시 봉개동)
- 초가짓기 : 집터다지는 소리, 흙이기는 소리, 흙바르는 소리, 성주풀이 (표선면 성읍리, 한림읍 월정리, 제주시 삼도동)

## 다. 지정 방안

- 안덕면 덕수리, 표선면 성읍리 등 마을무형의 자산이 풍부한 지역은 민속 보전회별로 도지정 무형문화유산으로 전승보전 체계 마련
  - 성읍리 무형문화유산 : 성읍창민요, 오메기·고소리술, 세시풍속, 포제, 민속마을 사람들의 남긴 무형의 전통적 자산 등
  - 덕수리 무형문화유산 : 불미공예, 방앗돌굴리는 노래, 집줄놓는 소리 등
- 연희 유형이 마을의 지역성과 특장화가 가능한 지역 우선함

<그림 V-1> 마을 민속연희 문화유산 지정 방안



## 5. ‘민속예능교육원’ 개설과 전수관 활성화

### 가. 필요성

- 무형문화유산 전수자, 공연과 기획을 위한 전문 인력, 전수교육자 등의 인적자원 확보와 양성 등을 위해 기 제도권 내의 대학 교육에 편성, ‘민속예능교육원’ 개원으로 무형문화유산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 도제식 전수 한계에서 벗어나 이론 및 기·예능적 연구와 학습을 위한 전수생을 확보하고 교육 제도를 마련하여, 전수생만이 아닌 도민 대상으로 한 전수 교육체계 확대 재조정
- 국제교류와 국제적 수준의 공연 등 제주전통문화 대내외 홍보 역을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
- 제주시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불교의식 전수회관, 덕수리 민속보전회 전시공연장, 귀리 곶보리 농사일소리 전수교육관,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등 각 전시관 공연, 전시,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연습장, 공연을 통한 전수관 활성화와 무형문화재별 전수 네트워크 구축

### 나. 사업내용

- 제주민요와 민속춤으로 제주의 전통문화 공연단체 전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통음악·연희적 측면의 공연, 기획 전문가 양성
- 보유자 및 전수조교(교육사)에 의한 전수 프로그램 운영
- 이수자 중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기·예능에 소질이 있는 자나 관련 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로 해당 도지정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전수하고자 하는 자는 전수장학생으로 선정<sup>5)</sup>하여 전수교육을 담당하도록 함
- 특히 놀이, 민요, 굿 등 살아있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교육 프로그램 실시

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2008.

## 다. 예산

- 문화재청과 대학 그리고 제주도가 출연하는 예산 운영 및 교육 이수자 일부 부담

## 라. 기대효과

- 다양한 전승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확고한 전승기반 마련
- 각종행사 및 축제에 수준 높은 제주민요 공연으로 감동하는 계기 마련
- 무형유산 콘텐츠화로 관광 자원화에 기여 함

## 6.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유산 전승보전과 진흥」 조례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및 비지정 무형문화유산의 보전·진흥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보유단체의 보유자 지정 및 전승비 지원, 유사 종목 통합과 전승범위 확대 관련 항 법적근거 마련
- 제주도는 무형 문화유산의 보고(寶庫)로, 제주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주지역의 전통문화 전승 활성화 및 세계화에 따른 지원

## 7.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유산 보전 진흥을 위한 5개년」 계획 마련

- 무형문화유산 전통의 적극적인 계승으로 보전 진흥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고, 제주만의 독창성과 역사성, 공동체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 사업 마련
- 비지정문화유산 조사로 보전·진흥 기반 조성

- 무형문화유산 전승보전을 위한 종합 계획으로 중점 추진 과제를 총망라하고 기본 방향을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유산 전승보전과 진흥조례」 제정에 따른 실천계획으로서의 효력이 있음
- 중점 추진과제
  - 종목통합 및 전승범위 확대 체제 개편
  - 종목통합으로 복수보유자 체제 인정
  - 제도권 교육 활용한 ‘민속예능교육원’ 개설 프로그램 운영
  - 개별 종목 전승보전을 위한 시행지침 마련
  - 무형문화유산 지식재산권 인정
  -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 및 가치 재창출

## 참고 문헌

- 강릉시문화원, 2006,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세계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결작 선정 백서』.
- 국립문화재연구소·동경문화재연구소, 2011, 『한·일무형문화연구 1』.
- 문무병·이명진, 2007,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국립문화재연구소.
- 문화재청, 2011,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운영방안」.
- 문화재청, 2011, 「(가칭)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연  
구」, 인하대학교.
- 박동석·정문교 감수, 2005, 『문화재보호법』, 민속원.
- 유네스코, 2003,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 이준우외, 2004, 『문화재보호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일본문화청, 1950, 「문화재 보호법」.
- 임재해, 2007, 「무형문화재의 가치 재인식과 창조적 계승」, 『한국민속  
학』 45, 한국민속학회.
- 제주도, 2003, 「제주도무형문화재지정보고서」, 문화정책과.
-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8, 「문화유산지킴이 운동과 올바른 무형문화 전  
승 대안 모색 문화정책세미나」.
-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전회, 2012, 「영등송별 대제일 리플릿」.
- 제주특별자치도, 200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문화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 200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2012, 『2012 문화·관광·스포츠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 광문당.
- 주성훈, 2006, 「문화재보호법의 제정방향」, 국회법제실.

# Abstract

## Promotional Strategies for th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Jeju'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Key Words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Jeju folk songs, *Jeju Keungut* (Jeju Grand Shaman rit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 Seongeup folk village, *Shimbang gutnor*(Jeju Shamanic Dramas), Folklore and Arts Training Center

The intangible cultural assets are in possession of a consistent identity while being realized without being fixed. At the same time, it also has the ability to create new formats within the social community. Currently however, the intangible cultural assets that have been designated by the provincial as well as the national government are not being spread out in the realities of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so the question of transmission of these valuable assets have come into serious discussions.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re is a dire need to develop effective models which would actualize and carry out the Jeju type preservation policie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ccordance to the protection policy such as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s 'sustainable' policy called "The Legislation regarding the Promotion and Preser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to strengthen the basic foundation.

The research methods that were chosen included searching into the legal policies related to cultural heritages, investigative analysis of ordinance regulations,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the actual designat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ites, interviews, questionnaires and possible implementation of legislations reg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The recommended policy plan that came out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 Jeju folk songs, Jeju arts and crafts and other provincial and national government designated cultural assets should be designated as provincial and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nd items such as the haenyeo culture which may be difficult to designate just one possessor, would have to be registered as national cultural heritage.
- The list of items that need to be integrated and redirect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clude <Jeju folk songs>, <Jeju keungut, Jeju Grand Shaman rit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 Seongeup folk village>, and <Shimbang gutnori, Jeju Shamanic Dramas>. These items should be preserved in the name of active transmission.
- Come up with preservation and promotion guidelines and acknowledge any individuals or groups that are in possession of a special craft or art as a person in posses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addition, establish a legal protection system where they would be protected for their cultural value and work.
- Reconstitute the Sori(Singing) Ceremony to recover the identity of each village community and come up with a specialized and localized form of entertainment for each village so that it can be connected to village festivals or the Tamna Culture Festival ultimately making it act as a bridge between the older and the younger generation.
- With the Jeju traditional culture being strong in its labor cultural factor, it may be difficult to raise it to an artistic level. Within this difficult situation, there is a desperate need for the participation of musical and entertainment experts who will be able to develop more modernistic style performances and contents.
- Activate a center where transmission training can take place along with running an educational program abou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nd its practices. By establishing an 'Folklore Art Center'

equipped with a performance hall and a training site, an exchange network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transmission and international exchanges may be formed.

- By implementing a transmission education program, a 'Folklore and Arts Training Center' connected with universities may be opened which can run various intangible cultural asset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 There is a need to enact the ordinance and policy of 「Th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
- An urgent need to establish the 「5 year Projec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

## 연구진

---

연구책임   좌   혜   경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전문연구원  
공동연구   고   영   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비상임연구위원

---

제주학연구 3

## 제주도 무형문화유산 전승보전 및 진흥 방안

---

발행인  ||   양영오  
발행일  ||   2012년 12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90-162   제주시 아연로 253  
          전화 : (064) 726-6138   팩스 : (064) 751-2168  
          홈페이지 : [www.jst.jdi.re.kr](http://www.jst.jdi.re.kr)  
인쇄처  ||   하나CNC출판

---

ISBN : 978-89-6010-299-6 9309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